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민 재정착·창업 지원 및 도시기능 활성화 등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건설·매입·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6147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서 중소기업 등이 입주하여 업무시설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0퍼센트 이상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임대하거나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건축물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6월 25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김 현 미  
국토교통부 장관

●대통령령 제29918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본문 중 “시험시공 결과에 관한”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발행한 시험시공 결과에 관한 서류
- 나. 발주청이 확인한 현장 시공실적

제34조제3항 중 “반영하여야”를 “반영해야”로, “기술개발자(해당 신기술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를 “기술개발자 또는 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기술의 사용협약(이하 “신기술사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를 “기술개발자 및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신기술사용협약 요건 및 신청서류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1. 해당 신기술 시공에 필요한 관련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할 것

2. 해당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를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을 것

3. 해당 신기술을 전수(傳受)한 자일 것

②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신기술사용협약서

2. 건설업 등록증 사본

3.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의 소유 또는 임대 현황에 관한 서류

4. 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5. 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체결된 건설기술용역 계약의 현황 정보를 조달청장으로부터 제공받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5조제9항(중전의 제8항) 중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제53조 및 제5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9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39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법 제39조의3제4항에 따라 지명된 책임건설기술인(이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과 토목, 건축, 기계, 조정 등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

⑥ 법 제39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제60조제1항에 따라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발주청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수립해야 한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설공사 중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2. 제55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3.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재해 복구,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긴급하게 시행하는 건설공사
- ③ 법 제3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기술자문위원회를 둔 발주청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구조물이 포함된 건설공사
  2. 구조물이 포함되지 않은 건설공사 중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 ④ 기술자문위원회는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 결과를 확정하여 심의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청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결과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
1. 적정: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마련되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건부 적정: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적정: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르지 않아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발주청은 제4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적정 판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정·보완하여 다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 ⑥ 기술자문위원회를 두지 않은 발주청은 발주하는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2.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 ⑦ 제6항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자문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로 본다.
- ⑧ 발주청은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심의를 받아 수립된 건설사업관리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공사규모, 공사기간, 총공사비 등 주요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다만, 주요 사업계획의 변경이 당초 건설사업관리계획이 승인될 당시의 건설공사의 주요 사업계획 대비 100분의 10 이내로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3. 법 제3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배치계획에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수가 감소되는 경우
  4. 그 밖에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또는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9조의3(실정보고의 조치 기한) ①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가 개선사항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이를 검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토 요청일부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이하 “실정보고”라 한다)를 해야 한다.

- ② 법 제39조의3제3항에 따라 실정보고를 접수한 발주청은 이를 검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일부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60조제1항 중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인(이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를”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로, “하여야”를 각각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7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해야 한다.

제7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이하 “설계안전검토보고서”라 한다)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③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의뢰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75조의2제6항(중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87조의 제목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을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설계, 공사감리”를 “건축설계(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공사감리(「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를 말한다)”로 한다.

제98조제3항 중 “20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사”를 “검토”로,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제3항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설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1.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성실하게 수립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서를 성실하게 검토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공종이 포함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⑨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명해야 하며, 수정이나 보완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의 적정성 검토와 그에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2조제3항”을 “법 제62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피해방지대책”을 “피해방지대책과 굴착공사로 인한 위험징후 감지를 위한 계측계획”으로 한다.

제100조제3항 전단 중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지정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의뢰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결과를”을 “결과를 안전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로, “통보하여야”를 “통

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0조제8항(중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2조제3항”을 “법 제62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100조의2 및 제10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①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이란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 ②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이하 “안전점검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기 위해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 ③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작성·관리 중인 명부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모집공고, 지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0조의3(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1.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공종이 포함된 건설공사의 안전점검결과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②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시시설, 가설공법, 공사목적물 및 공사장 주변에 대한 조사·분석의 방법과 그 결과의 적정성
2.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따라 제시된 보수·보강 등의 방법에 대한 적정성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안전점검결과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명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안전점검결과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제100조의2제2항에 따라 작성·관리 중인 명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대상, 검토방법 및 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1조제1항 중 “법 제62조제4항”을 “법 제62조제7항”으로, “규정”을 “기준”으로,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2조제4항”을 “법 제62조제7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2조제6항”을 “법 제62조제9항”으로, “보존하여야”를 “보존해야”로 한다.

제10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2조제7항”을 “법 제62조제11항”으로 한다.

제10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2조제10항”을 “법 제62조제14항”으로, “같은 조 제9항”을 “같은 조 제13항”으로 한다.

제101조의4 제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2조제11항”을 “법 제62조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2조제15항에 따라 정보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 수행에 대한 평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및 시공 종합평가에 관한 정보
2.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
3.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4.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결과
5.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종합보고서
6. 법 제62조제14항에 따라 실시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결과
7. 법 제62조제18항에 따라 실시한 설계의 안전성 검토 및 그 결과
8.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 사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한 결과
9. 그 밖에 건설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생산·제출·검토하거나 제출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생산·제출·검토·승인 및 통보하는 등의 경우에 정보망을 이용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67조제2항”을 “법 제67조제3항”으로 한다.

제6장제2절에 제1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의2(지도·감독) ① 법 제77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공제 효율의 조정

## 2. 임원의 교체

## 3.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② 법 제7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제조합이 법 제7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제115조제1항 중 “법 제9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를 “법 제91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5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4호 및 제16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본문 중 “법 제9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를 “법 제91조제1항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 제5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17조제1항에 제1호의2, 제8호의2,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4조의2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

8의2.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접수 및 관리

11의2.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안전관리계획 검토결과의 접수·확인·관리

11의3.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접수·확인·관리

제117조제1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62조제4항”을 “법 제62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법 제62조제5항”을 “법 제62조제8항”으로, “접수”를 “접수·확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62조제6항”을 “법 제62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의2,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제14호, 제16호 및 제1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법 제62조제10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및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

제117조제1항제14호(중전의 제12호의2) 중 “법 제62조제10항”을 “법 제62조제14항”으로, “같은 조 제11항”을 “같은 조 제1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중전의 제14호) 중 “제75조의2제3항”을 “법 제62조제18항”으로, “설계도서”를 “설계”로 한다.

제117조의2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39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 관리에 관한 사무

제117조의2제1항제10호(중전의 제9호) 중 “법 제6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법 제6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한다.

제12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85조제1항 및 제88조제1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제121조제1항 중 “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9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91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의 자”를 “법 제91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법 제91조제2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를 “법 제91조제3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별표 6 제2호하목1)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건설사업관리보고서”로,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제39조제4항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작성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수정하여 제출하거나 건설사업관리보고서”로 한다.

별표 11 제1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9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건설기술인이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3항 제1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나. 사용자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법 제91조제3항 제2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91조제3항 제3호	150만원	225만원	300만원
라. 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법 제91조제2항 제1호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마. 건설기술인이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3항 제4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바. 법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91조제3항 제5호			
1)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만원	10만원	10만원
2)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0만원	30만원	30만원
3)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50만원	50만원
4) 변경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p>사.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p> <p>1)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p> <p>2)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p> <p>3) 신고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p>	<p>법 제91조제3항 제6호</p>	<p>100만원</p> <p>200만원</p> <p>300만원</p>	<p>100만원</p> <p>200만원</p> <p>300만원</p>	<p>100만원</p> <p>200만원</p> <p>300만원</p>
<p>아.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업 양도 또는 합병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p> <p>1)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p> <p>2)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p> <p>3) 신고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p>	<p>법 제91조제3항 제7호</p>	<p>100만원</p> <p>200만원</p> <p>300만원</p>	<p>100만원</p> <p>200만원</p> <p>300만원</p>	<p>100만원</p> <p>200만원</p> <p>300만원</p>
<p>자. 법 제3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영업정지기간에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33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제외한다)</p>	<p>법 제91조제3항 제8호</p>	<p>300만원</p>	<p>300만원</p>	<p>300만원</p>
<p>차.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에 상호를 바꾸어 건설기술용역을 수주한 경우</p> <p>1) 수주 건수가 1건인 경우</p> <p>2) 수주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p>	<p>법 제91조제3항 제9호</p>	<p>50만원</p> <p>100만원</p>	<p>50만원</p> <p>100만원</p>	<p>50만원</p> <p>100만원</p>
<p>카.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취소처분등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해당 건설기술용역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p>	<p>법 제91조제3항 제10호</p>	<p>300만원</p>	<p>300만원</p>	<p>300만원</p>
<p>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p>	<p>법 제91조제3항 제11호</p>	<p>100만원</p>	<p>150만원</p>	<p>200만원</p>
<p>파. 법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사업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p>	<p>법 제91조제1항 제1호</p>	<p>1,000만원</p>	<p>1,500만원</p>	<p>2,000만원</p>
<p>하. 법 제3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착공하게 하거나 건설공사를 진행하게 한 경우</p>	<p>법 제91조제1항 제2호</p>	<p>1,000만원</p>	<p>1,500만원</p>	<p>2,000만원</p>

거.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2항 제1호의2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너.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91조제3항 제12호	150만원	225만원	300만원
더.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91조제2항 제2호	250만원	375만원	500만원
러.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착공했음을 알고도 발주자가 묵인한 경우	법 제91조제3항 제13호	150만원	225만원	300만원
머. 법 제62조제3항·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91조제3항 제14호	150만원	225만원	300만원
버.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1) 제출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제출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 제출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91조제2항 제3호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서. 법 제62조제14항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91조제2항 제3호의2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어.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2항 제3호의3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저.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91조제3항 제15호	150만원	250만원	300만원
처.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91조제2항 제4호	250만원	375만원	500만원

커.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91조제2항 제5호	250만원	375만원	500만원
터.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 발생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3항 제16호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퍼.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1항 제3호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 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의 신청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통보 기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의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건설 신기술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 사용협약 체결의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공사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발주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며, 건설기술용역업자는 해당 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고, 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의 실시설계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며,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절차와 해당 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절차를 각각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135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신기술 사용협약 체결요건과 증명서 발급 신청서류를 정하고,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의 대상, 절차 및 심의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일원화를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기술사용협약 요건 및 신청서류(제36조의2 신설)

- 1) 건설 신기술의 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해당 신기술 시공에 필요한 관련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해당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를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으며, 해당 신기술을 전수(傳受)한 자로 정함.
- 2) 건설 신기술의 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서류를 신기술사용협약서, 건설업 등록증 사본, 신기술 시공 장비의 소유 또는 임대 현황에 관한 서류 및 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등으로 정함.

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체결된 건설기술용역 계약 현황 정보제공의 근거 마련(제45조제6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체결된 건설기술용역 계약의 현황 정보를 조달청장으로부터 제공받아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음.

다.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의 대상, 절차 및 심의절차(제59조의2 신설)

- 1)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을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등으로 정함.
- 2) 발주청이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및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구조물이 포함된 건설공사 등으로 정함.
- 3) 기술자문위원회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적정,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확정하여 심의 요청일부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청에 통보해야 함.

라. 건설사업관리 수행 중 건설업자의 개선사항 요청에 대한 조치 기한(제59조의3 신설)

- 1)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개선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검토 요청일부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해야 함.
- 2)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보고한 건설업자의 개선사항 요청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보고의 접수일부부터 14일 이내에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마.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시 설계의 안전성 검토 의뢰(제75조의2제1항, 제75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 1) 발주청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시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는 대상을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안전성 검토의 전문화와 내실화를 도모함.
- 2) 발주청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에는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3)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검토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발주청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함.

바.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대상 확대(현행 제87조제1항 삭제)

중전에는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의 대상을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설기술용역 등으로 한정하였으나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소홀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총용역비나 총공사비와 무관하게 모든 건설공사 등으로 부실 측정의 대상을 확대함.

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등(제98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 1)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여 승인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계획서 검토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2)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검토 과정에서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발주청 등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건설안전의 위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음.
- 3)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수정·보완을 명하고, 해당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아. 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제100조의2 및 제100조의3 신설)

- 1)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함.
- 2)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고, 해당 적정성 검토결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할 수 있음.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9년 6월 2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장	김현미

**●대통령령 제29919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